

하나투어 윤리규범

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하나투어의 진정한 사업가치는 고객행복에 있다.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듣고,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행복을 이끌어낸다.

제 1 조 (고객존중)

고객행복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
제 2 조 (고객에 대한 가치제공)

- ①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익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.
- ② 고객 요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 3 조 (고객과의 약속 이행)

- ① 고객과의 약속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반드시 지킨다.
- ② 고객에게 진실만을 전해야 하며 판매 기본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
제 4 조 (고객의 이익보호)

-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.
- ②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,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- ③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당한 요구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.
- ④ 우리는 모든 경영 및 서비스 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.
- ⑤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2 장 공정한 경쟁

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 지역의 관련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존중하며,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.

제 5 조 (정당한 정보의 입수/ 활용)

- ①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.
- ②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.

제 6 조 (법규준수 및 상관습의 존중)

- 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② 해외주재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.
- ③ 국제경제협력개발(OECD)의 '국제상거래 뇌물 방지법', '부패방지법' 등 국내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.

제 3 장 공정한 거래

회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회사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지향한다.

제 7 조 (평등한기회 부여 및 공정절차에 의한 거래선 선정)

- ① 거래선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장기적인 협력업체로 육성한다.
- ② 거래선을 선정 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신규거래선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우수한 거래선을 적극 개발한다.

제 8 조 (거래처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)

- 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행위
- ② 거래선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
- ③ 대금결제조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법적 의무를 무시한 행위
- ④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
- ⑤ 직위, 직책, 관계 등 직장내 우위를 이용한 행위

제 9 조 (투명한거래질서의 유지)

- ① 거래선으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.
- ②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/지연/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.
- ③ 협력업체의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- ④ 호텔비, 행사비 등 거래관련 비용을 임의로 할인/이월/연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.

제 4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
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사명을 완수한다.

제 10 조 (임직원의사명)

-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목표를 공감하고,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업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및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, 관리하며,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.
- ④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.
- ⑤ 임직원은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시간을 준수하고, 업무 외 시간에도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음주,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.

- ⑥ 회사 내에서 음란물을 접하거나 업무시간 내 게임, 불필요한 인터넷사용을 하지 않는다.

제 11 조 (회사재산의 보호)

- ①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하지 않는다.
- ② 비품 등을 사적으로 유출하지 않으며,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및 사용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③ 회사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회사 내부인이라 할지라도 승인 받지 않은 자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.
- ④ 회사 재산에 대해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조치를 취한다.

제 12 조 (성희롱금지준수)

남녀고용평등법 제 2 조의 제 2 항에 따라 근무지 내외를 막론하고 성희롱, 성적인 행동 또는 표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13 조 (공정한직무수행)

- 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.
- ② 회사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 할 경우 투명하고, 합리적으로수행한다.
- ③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④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를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.
- ⑤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⑥ 승진/이동,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불필요한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 14 조 (임직원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)

- ① 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한다.
- ② 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,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.

제 15 조 (안전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)

- ①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- ②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임직원상호 존중)

- ① 불손한 언행이나 아르바이트/거래처 직원 등을 비방하는 언행을하지 않는다.
- ② 학벌, 성별, 종교, 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- ③ 상사, 동료, 부하에게인격 손상적 언행이나 비언어적 행위(노려보기, 몸짓 등)를 하지 않는다.
- ④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,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,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⑤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협력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하지 않는다.

제 17 조 (자기계발노력)

임직원은 책임진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자기계발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, 다른 직무에 대하여도 폭 넓은 사고와 지식을 배양하여 전사 이익을 지향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
하나투어는 모든 구성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, 구성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구성원 각자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며, 구성원의 업무 수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구성원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제 18 조 (임직원 존중)

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,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
제 19 조 (인재의 육성)

- 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제도를 갖추고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상사는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인재를 만들기 위해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.

제 20 조 (공정한 대우)

- ①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후 엄격하게 차별적으로 보상한다.
- ②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.

제 21 조 (자유로운 의사표시와 보장)

- ① 임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- ② 경영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하나샘 열린소리, 하발협등을 통한다.
- ③ 게시된 의견 중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개선조치 및 경영에 반영하고 이를 하나샘 공지사항에 게시한다.

제 22 조 (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)

- ①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회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.
- ②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.

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
회사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,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출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.

제 23 조 (합리적 사업 전개)

- ①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.
- ②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.

제 24 조 (주주의 이익보호)

- ① 주주에 대한 보답으로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.

- ②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.
- ③ 주주의 자산을 보전, 보호, 증가시키고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.

제 25 조 (사회발전에 공헌)

- ① 고용의 창출을 가져오며,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기회를 부여한다.
- ② 조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.
- ③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, 이를 해결하는데최선을 다한다.

제 26 조 (환경 보호)

- ①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②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, 공해 및 오염방지를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③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
〈부 칙〉

제 1 조 윤리경영실천지침

임직원들의 윤리규범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, 향응접대 수수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경영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.

제 2 조 포상 및 징계

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, 윤리규범과 윤리실천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.

제 3 조 상의 및 자문

임직원들은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경영기획본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조 해석기준

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기획본부에 의한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
제 5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

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.

제 6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7 조 (수정일) 본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 (근거문서 840684)

제 8 조 (수정일)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로 개정안 검토 후, 기존 안을 유지하여 시행한다.

제 9 조 (수정일)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로 주관조직을 재정립하여 시행한다.

제 10 조 (수정일) 본 규정은 2019년 11월 6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제 11 조 (수정일) 본 규정은 2020년 10월 19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 (문서번호 :E20101406401)